

의안번호	2210620
의 퇴 인	서삼석 의원
회 답 일	2025. 7. 24.
추계번호	25B3013

수산사료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사료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억원(연평균 2,000만원)으로 추계됨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안 제6조)	100	-	-	-	-	100	20

주: 1.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유사 연구용역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용역 실시 방법 및 규모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2. 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하고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국가 등의 책무)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사료의 수급조절·가격안정·품질향상 및 안전성확보와 수산사료자원개발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2	안 제6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사료의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수산사료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함)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제5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3	안 제7조(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수산사료산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음. 이 경우 통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법」을 준용함(제1항)	재량규정
4	안 제8조(수산사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사료의 수급안정·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산사료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함)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5	안 제9조(수산사료관련단체의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사료의 수급안정 및 품질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 또는 사료의 수급안정 및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단체(이하 “수산사료관련단체”라 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6	안 제13조(수산사료의 수입신고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사료의 안전성확보·수급안정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수산사료에 대하여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정을 하게 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7	안 제15조(수산사료의 공정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사료의 품질보장 및 안전성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산사료의 제조·사용 및 보존방법에 관한 기준과 수산사료의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수산사료공정”이라 함)을 설정·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음.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고시하여야 함(제1항)	재량/의무규정
8	안 제25조(수산사료검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산사료의 안전성확보와 품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수산사료의 수요자로부터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한 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수산사료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제1항)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산사료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수산사료검사원”이라 함)로 하여금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수산사료를 검사하거나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試料)를 무상으로 수거(收去)하게 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9	안 제30조(수산동물사육시험)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사료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국내에서 제조·판매되는 수산사료를 활용한 수산동물 사육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동물사육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10	안 제31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사료의 원료관리, 제조 및 유통의 과정에서 위해(危害)한 물질이 해당 수산사료에 혼입되거나 해당 수산사료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산사료별로 제조시설 및 공정관리의 절차를 정하거나 각 과정별 위해요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 함)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여 고시함(제1항)	의무규정
		해양수산부장관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수산사료공장으로 지정을 받기를 희망하거나 지정을 받은 제조업자(종업원을 포함한다)에게 위해요소중점관리에 필요한 기술·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제5항)	재량규정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제6항)	
11	안 제32조(감독)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수산사료공장의 지정을 받은 제조업자에 대하여 제조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등의 우선지원을 할 수 있음(제9항)	재량규정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산사료의 수급조절 및 품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수입업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수산사료시험검사기관 또는 수산사료검정기관의 사무소·공장 또는 창고에 출입하여 장부·서류·수산사료,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제1항)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7조제1항제7호의 수산사료를 수산동물에게 사용금지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가 등에 출입하여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음(제2항)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 미대상: 수산사료의 안전성 확보와 수산사료자원개발 등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일반적인 책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안 제6조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제1항 - 기본 계획 수립	○	• 유사사례 참고
		제5항 - 시행 계획 수립	—	• 미대상 -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은 해양수산부에서 재정소요 없이 자체적으로 수립 가능할 것으로 예상
6	안 제13조(수산사료의 수입신고 등)		—	• 미대상 -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유사 법률인 「사료관리법」(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경우, 수입신고는 사료관리단체 등을 지정하여 위탁운영하고 있고, 수수료 수입을 통해 운영비 등을 충당하고 있음 - 해양수산부는 제정안에 따른 수산사료의 수입신고도 동일한 체계로 운영할 계획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임
10	안 제31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 미대상 -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유사 법률인 「사료관리법」(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경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관련 교육훈련기관 등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 중으로, 교육비·심사료 수입 등을 통해 운영비 등을 충당하고 있음 - 해양수산부는 제정안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관련 교육훈련도 동일한 체계로 운영할 계획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임 - 안 제7항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수산사료공장의 지정을 받은 제조업자에 대한 제조시설의 개선 등 우선지원과 관련하여 공장 운영비 등 매년 22.4억원을 지원 중인 양식어업지원(융자)사업¹⁾을 통해 제정안의 취지를 반영할 수 있다는 의견임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1	안 제32조(감독)	—	• 미대상 —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검사 등 관련 비용은 사료연구센터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을 통해 기존 인력 등을 활용해 국가기관에서 수행할 예정으로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임
3	안 제7조(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	—	• 현행 사업 존재 — 현재 관련 사업을 수행 중으로, 제정안에 따라 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나, 현 시점에서 향후 확대될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4	안 제8조(수산사료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5	안 제9조(수산사료 관련단체의 지원)	—	
7	안 제15조(수산사료의 공정 등)	—	
8	안 제25조(수산사료검사)	—	
9	안 제30조(수산동물사육시험)	—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의 일부 조항은 현재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제정안에 따라 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나 현 상황에서 확대되는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을 알 수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표 2] 제정안과 현행 사업 비교

연번	조·항(조제목)	현행 사업		
3	안 제7조(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개요	25예산
		환경친화형 양식 배합사료 지원(사용확대 기반구축) (3140-300)	배합사료 활성화 기반구축을 위한 배합사료 공급실태 조사, 배합사료 현장적용시험 등 정책연구 수행	8,481 (2,149)
4	안 제8조(수산사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국립수산물과학원 사료연구센터에서 '배합사료 공급업체 정보시스템' 운영중		
5	안 제9조(수산사료관련단체의 지원)	배합사료 공급 안정화를 위해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건립' 및 '양식어업지원(용자) 사업' 등을 통해 배합사료 제조업자 등에 대한 지원 실시중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개요	25예산
		환경친화형 양식 배합사료 지원(친환경 배합사료 공장건립) (3140-300)	안정적인 배합사료 공급을 위하여 배합사료 제조업체로 등록하거나 등록 예정인 자를 대상으로 배합사료 제조 공장 건립 지원	8,481 (1,000)
7	안 제15조(수산사료의 공정 등)	양식어업지원(용자)	배합사료 제조업체 및 어분 제조업체 에게 공장 운영비를 용자 지원	2,240
		'사용확대 기반구축 사업'을 통해 국립수산물과학원 사료연구센터에서 제정안에 따른 규격설정·수산사료검사·수산동물사육시험 등을 위한 연구를 수행 중		
8	안 제25조(수산사료검사)	(단위: 백만원)		
9	안 제30조(수산동물사육시험)	사업명	사업개요	25예산
		환경친화형 양식 배합사료 지원(사용확대 기반구축) (3140-300)	배합사료 활성화 기반구축을 위한 배합사료 공급실태 조사, 배합사료 현장적용시험 등 정책연구 수행	8,481 (2,149)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본 추계에서는 현재 관련 사업을 실시 중이거나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조항을 제외하고 안 제6조의 수산사료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대한 비용을 추계함
 -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수산사료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계 기간 중 첫해에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제정안 부칙이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안 제6조)
 - 유사사례를 참고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수산사료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억원(연평균 2,000만원)으로 추계
 - － 추계기간 중 첫해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 유사사례로, 해양수산부는 제3차 친환경어업 육성계획('25~'29) 수립 기초 연구를 위해 100백만원 집행

[표 3] 수산사료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100	-	-	-	-	100	20

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유사 연구용역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용역 실시 방법 및 규모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가능한 조문에 대하여 대해 일정 예산의 편성을 전제로 추계한 것으로, 향후 실제 사업 운영 방식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nabo.go.kr

[참고자료] 수산사료의 관리 및 지원 관련 현행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25 예산
환경친화형 양식배합사료 지원	사용 확대 기반구축	배합사료 활성화를 위한 연구, 배합사료 시설 등 인프라 지원	8,481 (2,149)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 건립	배합사료 공장 건립비 지원 *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8,481 (1,000)
양식어업지원(융자)		배합사료·어분 제조업체 운영비 융자* 지원 * 융자 70%, 자부담 30%	2,240

자료: 해양수산부